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	기관(부서)의 장
람	



제675호 2023. 3. 10.(금)

【조 례】

_ () 고	창군 조례	제2673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
O 고	창군 조례	제2674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5
O 고	창군 조례	제2675호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O 고	창군 조례	제2676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1
O 고	창군 조례	제2677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18
O 고	창군 조례	제2678호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0
O 고	창군 조례	제2679호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2
O 고	창군 조례	제2680호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4
O 고	창군 조례	제2681호	고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26
O 고	창군 조례	제2682호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28
O 고	창군 조례	제2683호	고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31
O 고	창군 조례	제2684호	고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4
O 고	창군 조례	제2685호	고창군 어업인 육성 기본 조례	39
->				
회				
람				

발행 고 창 군(편집 행정지원과 ☎ 063-560-2326)

【규 칙】 ○ 고창군 규칙 제12	14호 고창군 기업 5 부개정규칙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	42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3	-35호 고창 흥덕농공	· 삼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45
○ 고창군 고시 제2023	-38호 개발행위허가 고시	의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50
○ 고창군 고시 제2023	-43호 궁산권역 거집	점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51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3	-445호 고창 군관리 결정(변경) ²	계획(고창읍성 지 주민공람 공고	구단위계획)	58
○ 고창군 공고 제2023	-452호 공공하수도 시	나용개시 공고		60
○ 고창군 공고 제2023	-479호 2023년 고창군 시행 공고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66
○ 고창군 공고 제2023	-504호 물품 소액 수	의견적 제출 안내		80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73 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본사나 사업장이 고창군에 소재할 것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 다.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이고, 상시고용인원 중 청년 비율이 40% 이상일 것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분양가의 일부"를 "분양가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100억원까지"를 "300억원까지"로 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해서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시설 투자보조금을 기업당 최고 300억원까지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만,「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 2.30.>	제2조(용어의 뜻)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설>	15.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본사나사업장이 고창군에 소재할 것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다. 「고창군 청년 기본조례」제2조제1호 에 따른 청년이 대표이고, 상시고용인 원 중 청년 비율이 40% 이상일 것
제16조(산업단지분양가 지원)①군 수는 고창군 또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단지 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제16조(산업단지분양가 지원)① 분양가를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생략)	제3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② 300억원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③ (생략)

제35조(지원특례) ① ~ ③ (생략)

<신설>

까지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지원특례)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해서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보조금을 기업당 최고 300억원까지 가산하여 지원 할수 있다.
 다만,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74 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75 호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고창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고창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고창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출연금
 -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
 - 5. 기금의 운용 수익
 - 6. 그 밖의 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
- 2.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 3.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 7.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 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 4. 영제9조의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 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도조례)
- 5.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 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군수는 제6조의 기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고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자활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 이내로 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 ②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하며, 3면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화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체이자는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 0퍼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 ⑤ 군수는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 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 담당자
- 제12조 (기금결산보고서)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적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14조(감면조치) 군수는 융자금 등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 제15조(정리보류)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 등 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잔액 중 사회복지장 학계정 및 노인복지계정은 일반회계로 귀속하며, 양성평등계정은 인재양성과로 이관하고 자활계정은 자활기금으로 관리한다.
-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융자되었거나, 신청 중인 융자금에 대하여도 제정 조례를 적용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76 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합노인복지관"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고창군에서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등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이나 단

체를 말한다.

- 3. "이용료"란 시설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합사회복지관 :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위한 제반사업
 - 2. 노인복지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을 보호하고 각종 상담 과 건강·교양·오락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사업
 - 3. 노인복지센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 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 등
- 제5조(이용대상)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아동여성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별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 아동, 여성 등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자
 - 2. 노인복지관 : 60세 이상 노인으로 건강교양강좌오락 등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자
 - 3. 노인복지센터 : 심신이 허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등급을 받고 이용을 희망하는 자
- 제6조(시설운영) ①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고창 군종합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위탁운영자("수 탁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③ 군수는 위탁 운영 시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개관시간(평일 09:00~18:00)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개관시간을 연장하 거나 단축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토요일, 법정공휴일, 개관기념일 및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의 개·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휴관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징수) ①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원가산출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5세 이상 노인, 사례관리대상: 100%
 - 2. 국가유공자·법정차상위계층 : 50%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수탁자 의무)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수탁자는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 시설운영으로 얻은 재산을 고창군종

합노인복지관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2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별표 1]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명칭.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규 모	비고
고 창 군 종합사회복지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연면적	
고 창 군 노인복지관	전봉준로 88-15	2,936.54m²	
고창군노인복지관 (분 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18 (고령자복지주택 1층)	연면적 1,318.16㎡	
고 창 군 노인복지센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15	연면적 314.55㎡	

[별표 2]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이용료 (제8조 관련)

시 설 명	세부시설	기 준	요 금	비고
종합사회	체력단련실	1회	무 료	
복 지 관 · 노 인 복지관	경 로 식 당	1식	식 비 1,500원 - 국민기초수급자,85세이상 노인 : 무료 -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800원	
	물리치료실	1회	1,000원	
노인복지 센 터	이용자 실비	열	보건복지부 지침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1	ı	1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77 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
지원액은 다음 호와 같이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u>다</u>	<u><</u> 단서 삭제>
만,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	
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78 호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심의회에서 심의한다"를 "제8조에 따른 고창군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7조의2(기금의 존속기간) 기금
	의 존속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
	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
	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
	속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
	<u>할 수 있다</u>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①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운용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창군	<u>제8조에 따른</u>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창군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제22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심의	한다.
회에서 심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②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	
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u>사회복지과장</u>	1 <u>인재양성과장</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79 호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중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공사부분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를 "예산범위 안에서 협의체 지원기금에 일정액을 지급한다."로 한다.

같은조제3항중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채용·복무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개정 규정의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①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 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
준)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	준) ①
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요원	
의 수당은 <u>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u>	예산범위 안에서 협
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공사부분	의체 지원기금에 일정액을 지급한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에서	<u>다.</u>
군수가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u>복무에</u>	③ <u>채용·복</u>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	무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
<u>다.</u>	에서 관리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80 호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 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 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81 호

고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조직된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민족통일고창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군민계도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

- 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
- 3. 국내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 4.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82 호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 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 2. "가업"이란 고창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고창군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
 - 2.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명인 심사위원 회에서 선정한 명인
-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가업승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6조(가업승계 지원)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
 -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

- 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
-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 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83 호

고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열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고창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아열대 농업"이란 아열대 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② 아열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과 고창군 소재 관련법인 단체 등은 고창군이 마련한 아열대 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 ·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고창군 아 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아열대 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 2. 아열대 농업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
 - 3. 아열대 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
 - 4. 아열대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추진전략
 - 5. 아열대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 6. 아열대 농업 전문인력 양성
 - 7. 그 밖의 아열대 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열대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아열대 작물별 농업인 수 및 재배 면적 등
 - 2. 아열대 농업 관련 정책
 - 3. 아열대 농업 생산·가공 및 유통·판로 현황
 - 4. 아열대 농업 기술·판매의 문제점 등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와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 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아열대 농업 조사 및 연구
 - 2. 아열대 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 3. 아열대 농업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구축
 - 4. 아열대 농업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 5. 아열대 농업 전문인력 양성
 - 6. 아열대 농업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 7. 그 밖에 아열대 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등) ① 군수는 아열대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관련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아열대 농업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84 호

고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고 창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공연"이란 음악·연극·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 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

-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 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
-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 9.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 ②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 등에 따른다.
- 제4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 5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 ③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 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21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 1.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 2.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4. 그 밖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
-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행사 일시 및 장소
- 2. 행사 주최, 주관 및 후원
- 3. 행사의 주요 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 임무 및 안전관리조직
-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
-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 요청) ① 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 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예방 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 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 제9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 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 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 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안전관리요원으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 도록 할 것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어업인 육성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85 호

고창군 어업인 육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 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고창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어촌계, 공동체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정 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 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전라북도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고창군 자체 시책으로서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어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어업인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
 - 2. 어업인, 수산단체 육성 및 어업 경영을 위한 국내·외 연수, 교육컨설 팅 등 교육에 관한 사업
 - 3.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 4. 어업인 등 화합행사, 수산물 홍보행사, 향토문화·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 5.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재 등) 지원사업
 - 6.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 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방법·조건 및 보조금의 사용과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10일

고창군 규칙 제 1214 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2 산업단지분양가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표2]

산업단지분양가 지원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지 원 기 준						
분양면적	보조금 지급율	비고				
9,917㎡이상~16,528㎡미만	정상분양가의 10%					
16,528㎡이상~33,057㎡미만	정상분양가의 20%					
33,057㎡이상~66,115㎡미만	정상분양가의 30%					
66,115㎡이상~99,173㎡미만	정상분양가의 40%					
99,173㎡이상 ~165,289㎡미만	정상분양가의 50%					
165,289㎡이상~330,578㎡미만	정상분양가의 70%					
330,578㎡이상	정상분양가의 10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2]

산업단지분양가 지원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Ţ	 원기준	
분양면적	보조금 지급율	비고
9,971㎡이상 ~ 16,528㎡미만	정상분양가의 10%	
16,528㎡이상 ~ 33,057㎡미만	정상분양가의 20%	
33,057㎡이상 ~ 66,115㎡미만	정상분양가의 30%	
66,115㎡이상 ~ 99,173㎡미만	정상분양가의 40%	
99,173㎡이상	정상분양가의 50%	

[별표2] 산업단지분양가 지원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X	지원기준							
분양면적	보조금 지급율	비고						
9,971㎡이상 ~	정상분양가의 10%							
16,528㎡미만	10%							
16,528㎡이상 ~ 33,057㎡미만	정상분양가의 20%							
33,057㎡이상 ~ 66,115㎡미만	정상분양가의 30%							
66,115㎡이상 ~ 99,173㎡미만	정상분양가의 40%							
99,173㎡이상 ~ 165,289㎡미만	정상분양가의 50%							
165,289㎡이상 ~ 330,578㎡미만	정상분양가의 70%							
330,578㎡이상	정상분양가의 100%							

고창군 고시 제 2023 - 35호

고창 흥덕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고창 흥덕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 승인된 고창 흥덕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2일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고창 흥덕농공단지

나. 위 치 : 전북 고창군 흥덕면 오호리 일원

다. 면 적 : 314,622 m²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의 공업입지 공급

3.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고창군수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과 또는 제한 업종(변경없음)

○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 계획(변경)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TE .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пITT
산업시설용지	공장 및 부대시설	240,433.1	-	240,433.1	76.4	76.4	
	저류지	5,385.0	감)5,385.0	-	1.7	-	
지원시설용지	공동이용시설	2,463.4	-	2,463.4	0.8	0.8	
	소 계	7,848.4	감)5,385.0	2,463.4	2.5	0.8	
	도로	26,221.0	-	26,221.0	8.3	8.3	
	녹지	16,220.7	-	16,220.7	5.2	5.2	_
공공시설용지	공공공지	6,415.9	-	6,415.9	2.0	2.0	
99시 <u>5</u> 9시	하천	17,482.9	-	17,482.9	5.6	5.6	
	저류지		증)5,385.0	5,385.0	-	1.7	
	소 계	66,340.5	증)5,385.0	71,725.5	21.1	22.8	
	합 계	314,622.0	-	314,622.0	100.0	100.0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시설계획(변경없음)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구표 경과지	역조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804	20	집산 도로	373	광장27호 오호리744	소로3-822 오호리742	일반	_	2007.12.18	하천 486.5m²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805	15	국지 도로	397	중1-804 오호리744	중1-804 오호리743	일반	-	2007.12.18	_
기정	중로	2	806	15	국지 도로	181	중1-804 오호리744	중로2-802 오호리744	일반	_	2007.12.18	_
기정	중로	2	807	15	국지 도로	167	중로2-806 오호리742	오호리744	일반	_	2007.12.18	하천 321.4m²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808	15	국지 도로	110	중1-804 오호리743	중2-807 오호리743	일반	_	2008.09.08	-
기정	소로	3	822	3	투수 도로	124	중1-804 오호리741-1	경관녹지20호 오호리741	보행 전용	_	2008.09.08	-
기정	소로	3	823	5	투수 도로	550	오호리737	오호리737	보행 전용	_	2007.12.18	_

2) 녹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н ച
 총 면 적	240,433.1	100.0	
녹 지 면 적	16,220.7	5.2	7개소

3)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³)		최 초	비고
丁亚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판	T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미ㅛ
기정	1	공공공지	홍덕농공단지 공공공지	오호리 729-1	1,181.7	-	1,181.7	2007. 12.18	
기정	2	공공공지	홍덕농공단지 공공공지	오호리 736	1,860.2	-	1,860.2	2007. 12.18	
기정	3	공공공지	홍덕농공단지 공공공지	오호리 735-2	3,374.0	ı	3,374.0	2007. 12.18	

4) 하천 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위치							
구분	보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연장(km)	장(km) 폭원(m)	l(m)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	하천	흥덕 농공단지 소하천	오호리 742	오호리 742	_	0.553	19~27	17,482.9	2007. 12.18	

5)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7 11	도면표시	al al m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²)		최초	מוש
구분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군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	저류시설	흥덕농공단지 저류시설	오호리 730	5,385.0	_	5,385.0	2007. 12.18	

6)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총 용수량 (m ¹ /일)	공업용수량 (m'/일)	생활용수량 (m'/일)	소화용수 (m'/일)	비고
금 회	1,212.3	1,089.3	73	50	

7)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총 오·폐수량(㎡/일)	오폐수량(㎡/일)	지하수유입량(㎡/일)	н ച
 금 회	376.8	342.5	34.3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사업완료)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재	원	비고
⊤ ਦ	/4I	보 조	기 타	H T
■ 농공단지조성	16,367	7,640	8,727	
- 용 지 매 수	4,881			• 국 비: 6,684
- 공 사 비	10,000			• 도 비: 478
- 부 대 비 용	1,486			• 군 비: 9,205

나. 연차별 자금계획(사업완료)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년 차 별 투 자 계 획							
ਾ ਦ	<u> </u>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16,367	105	168	3,311	7,864	3,602	1,317		
- 국 비	6,684	_	_	-	5,377	1,307	-		
- 지방비(도비)	478	_	_	_	_	478	_		
- 지방비(군비)	9,205	105	168	3,311	2,487	1,817	1,317		

-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준공된 산단으로 해당없음)
- 9.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 1. 1. ~ 2018.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 나.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없음)

다	유치언족의	배치계회	뚜느	유치엇조벽	공급면적(변경	없은)
Ч .	11 / 1 H A - 1		<u></u> — 1	11 / 1 H A =	O H $1'$ \neg V $1'$ O	$H \lambda \sqcap I$

78		면적(m²)			비율(%)		шп
구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240,433.1	-	240,433.1	100.0	-	100.0	
식료품제조업(10)	31,580.6	-	31,580.6	13.1	-	13.1	
전자제조업(24)	5,614.0	-	5,614.0	2.4	-	2.4	
금속제조업(25)	182,744.4	-	182,744.4	76.0	-	76.0	
기계및장비제조업(29)	20,494.1	-	20,494.1	8.5	-	8.5	

- 라.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변경없음)
- 마.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해당없음)
- 바. 창업·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0. 관련 도서 열람 방법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2)

고창군 고시 제2023 - 38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고창군 고시 제2020-185호(2020.12.18.)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한 고창읍 덕산리 16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6일

-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해제 내용
 - 가. 해제지역 위치 :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16번지 일원
 - 나. 해제지역 면적 : 153,023㎡(전부해제)
 - 다. 해제사유 :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3-57호, 2023.03.03.)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라. 해제사항 : 고창군 고시 제2020-185호(2020.12.18.)에 의한 개발행위허 가의 제한 사항
 - 마. 해제시기 : 해제 고시일로부터
 - 바.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없음
- 2. 관계도서 : "실음생략"
- 3.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고시 제2023 - 43호

궁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궁산권역 거점개발사업'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6조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3. 03. 08.

고 창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고창군 궁산권역 거점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마을 내 생활환경 정비,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마을 소멸 극복 등을 통해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도모

- 3. 사업비 소요액 : 5,729백만원 (자부담 29백만원)
-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1) 사업의 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작은바다문화관
 - 지역경관개선: 골목국화정원, 작은바다정원, 국화심터조성
 - S/W사업 : 마을인재육성, 공동체활성화, 홍보마케팅 등
 - 2) 사업의 구역 :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궁산리 궁산마을 일원
- 5. 사업예정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6. 사업의 효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여건 마련을 통한 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

- 7.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9. 기타

기본계획서는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063-560-2635)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수 있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 작은바다 문화관 및 건강쉼터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배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민호	도시도세시	시민	\\ \\	(m²)	(m²)	주소	성명	
1	심원면 궁산리	175-4	대	235	235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궁*마을회	
2	심원면 궁산리	174-10	전	455	45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합 계	필지수	: 2		690 m²			

□ 방범용 CCTV 설치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지	ŀ	비고
민호	모시모세시	시 원	시독	(m²)	(m²)	주소	성명	
1	심원면 궁산리	산3-13	답	1,046	1,046	-	국(건설부)	
2	심원면 궁산리	704	답	11,260	11,260	-	국(건설부)	
3	심원면 궁산리	181-3	도로	20	2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합 계	필지수 : 3	3		12,326m²			

□ 골목국화정원

[담장정비 지적현황]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MILM	비고
				(m²)	(m²)	주소	성명	
1	심원면 궁산리	217-3	도로	132	132	-	김*원 외 10인	
2	심원면 궁산리	228-3	도로	17	17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3	심원면 궁산리	240-2	도로	258	258	-	김*원 외 10인	
4	심원면 궁산리	248-2	도로	83	83	-	김*원 외 10인	
5	심원면 궁산리	252-3	도로	149	149	-	김*원 외 10인	
6	심원면 궁산리	255-2	도로	96	96	-	김*원 외 10인	
7	심원면 궁산리	258-2	도로	298	298	-	김*원 외 10인	
8	심원면 궁산리	258-6	도로	122	122	-	김*현	
9	심원면 궁산리	186-2	도로	36	3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0	심원면 궁산리	185-2	도로	36	3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1	심원면 궁산리	192-3	도로	149	149	-	김*원 외 10인	
12	심원면 궁산리	191-2	도로	46	46	-	김*원 외 10인	
13	심원면 궁산리	174-3	도로	73	73	-	김*원 외 10인	
14	심원면 궁산리	172-3	도로	175	175	-	김*원 외 10인	
15	심원면 궁산리	168-3	도로	314	314	-	김*원 외 10인	
16	심원면 궁산리	169-2	도로	17	17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7	심원면 궁산리	170-2	도로	53	53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8	심원면 궁산리	180-2	도로	69	69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9	심원면 궁산리	168-3	도로	314	314	-	김*원 외 10인	
20	심원면 궁산리	86-1	도로	129	129	-	김*원 외 10인	
21	심원면 궁산리	88-2	도로	198	198	-	김*원 외 10인	
22	심원면 궁산리	91-3	도로	63	63	-	김*원 외 10인	
23	심원면 궁산리	95-6	도로	53	53	-	김*원 외 10인	
24	심원면 궁산리	704	도로	11,260	11,260	-	국(건설부)	
	합 계	필지수	: 24		14,140m²			

[국화거리조성_배수 정비 지적현황]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민호	모시모세시	시 인	^ =	(m²)	(m²)	주소	성명	
1	심원면 궁산리	241	전	757	35	-	강*자	
2	심원면 궁산리	293	전	1,874	40	-	김*관	
3	심원면 궁산리	288-2	대	360	30	-	이*규	
4	심원면 궁산리	704	도로	11,260	95	-	국(건설부)	
5	심원면 궁산리	259-3	도로	149	5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6	심원면 궁산리	261-4	도로	66	2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7	심원면 궁산리	186-2	도로	36	2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8	심원면 궁산리	186-4	도로	60	15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9	심원면 궁산리	182-2	도로	60	2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0	심원면 궁산리	175-4	대	235	25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궁*마을회	
	합 계	필지수	: 10		495 m²			

[국화거리조성_마을안길 테마거리 지적현황]

u1 =		-l ul	-10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m²)	(m²)	주소	성명	비고
1	심원면 궁산리	88-4	대	337	48	-	나*황	
2	심원면 궁산리	80	전	1,544	195	-	최*암	
3	심원면 궁산리	76	전	975	186	-	한*국	
4	심원면 궁산리	73-2	도로	69	69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5	심원면 궁산리	181-1	대	916	42	-	김*주	
6	심원면 궁산리	168-7	도로	60	60	-	이*섭	
7	심원면 궁산리	176	대	757	24	-	이*임	
8	심원면 궁산리	182-2	도로	69	69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9	심원면 궁산리	184-2	도로	60	6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0	심원면 궁산리	187-2	도로	13	13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1	심원면 궁산리	185-2	도로	36	3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2	심원면 궁산리	186-2	도로	36	3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3	심원면 궁산리	75-1	대	502	54	-	한*하	
14	심원면 궁산리	188-3	도로	66	66	-	김*원 외 10인	
15	심원면 궁산리	188-2	도로	13	13	-	김*원 외 10인	
16	심원면 궁산리	261-4	도로	66	6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7	심원면 궁산리	258-6	도로	122	112	-	김*현	
18	심원면 궁산리	258-5	도로	17	17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19	심원면 궁산리	259-1	전	641	39	-	김*희	
20	심원면 궁산리	259-3	도로	149	146	-	고창군	
21	심원면 궁산리	262	전	641	27	-	최*만	
22	심원면 궁산리	263-1	대	526	45	-	김*희	
23	심원면 궁산리	252-1	대	274	36	-	김*애	
24	심원면 궁산리	250	대	608	54	-	이*규	
25	심원면 궁산리	245	대	403	48	-	김*근	
26	심원면 궁산리	704	도로	11,260	1,278	-	국(건설부)	
27	심원면 궁산리	284	대	823	33	-	라*열	
28	심원면 궁산리	274	대	873	51	-	한*교	
29	심원면 궁산리	286	대	790	48	-	정*례	
30	심원면 궁산리	244	대	380	54	-	김*원 외 10인	
31	심원면 궁산리	243	대	218	27	-	김*근	
32	심원면 궁산리	241	전	757	90	-	강*자	
33	심원면 궁산리	287	대	522	81	-	김*진	
34	심원면 궁산리	290-2	대	660	69	-	문*옥	
35	심원면 궁산리	294	대	565	39	-	소*수	
36	심원면 궁산리	293	전	1,874	144	-	김*관	
37	심원면 궁산리	295	전	698	60	-	강*자	
	합 계	필지수	: 37		3,535 m²			

□ 작은바다정원

[작은바다정원_옹벽 설치 대상지 지적현황]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건오	포시고세시	시 긴	\\\ <u>\</u>	(m²)	(m²)	주소	성명	비고
1	심원면 궁산리	228-5	유지	218	2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2	심원면 궁산리	200	유지	1,537	4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3	심원면 궁산리	201	유지	13,088	3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4	심원면 궁산리	153-1	유지	19,238	2,6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5	심원면 궁산리	98	유지	20,033	67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6	심원면 궁산리	92	유지	29,120	12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합 계	필지수	: 6		4,348 m²			

[작은바다정원_데크길 정비 대상지 지적현황]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н л
민호	모시모세시	시민	\\ \\	(m²)	(m²)	주소	성명	비고
1	심원면 궁산리	215	유지	1,285	45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2	심원면 궁산리	228-5	유지	218	2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3	심원면 궁산리	201	유지	13,088	3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4	심원면 궁산리	200	유지	1,537	4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5	심원면 궁산리	153-1	유지	19,238	19,23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6	심원면 궁산리	174-2	유지	850	85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	심원면 궁산리	173	전	27	2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8	심원면 궁산리	98	유지	20,333	20,33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9	심원면 궁산리	87-3	전	237	23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10	심원면 궁산리	92	유지	29,120	29,1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11	심원면 궁산리	95-10	전	67	6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12	심원면 궁산리	103-1	유지	1,071	2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합 계	필지수	: 12		71,505 m²			

[작은바다정원_활뫼산책길 정비 대상지 지적현황]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ы ¬
민오	도시소새시	시 민	시속	(m²)	(m²)	주소	성명	비고
1	심원면 궁산리	산 4-1	임야	893	893	-	김*휘 외 7인	
2	심원면 궁산리	산 5-9	임야	20,033	20,033	-	김*휘 외 7인	
3	심원면 궁산리	산 5-3	임야	4,066	4,066	-	신*선	
4	심원면 궁산리	295-3	전	1,696	1,696	-	강*자	
5	심원면 궁산리	산 5-2	임야	694	694	-	신*선	
6	심원면 궁산리	292-1	전	586	586	-	강*자	
7	심원면 궁산리	산 5-1	임야	31,894	31,89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단법인 ***선교회	
8	심원면 궁산리	산 7-1	임야	41,355	41,355	고창군 심원면 궁산리	전주*씨 ***파종중	
9	심원면 궁산리	산 9-1	임야	2,975	2,975	-	이*섭	
10	심원면 궁산리	산 9-15	임야	35,603	35,603	-	이*익	
11	심원면 궁산리	72	전	2,050	2,050	-	박*녀	
12	심원면 궁산리	74	전	879	879	-	이*월	
13	심원면 궁산리	73-1	전	1,355	1,355	-	나*원	
14	심원면 궁산리	산 10-1	임야	81,124	81,124	-	김*휘 외 7인	
15	심원면 궁산리	95-8	대	93	35	-	이*성	
	합 계	필지수	: 15		225,238 m²			

□ 국화쉼터

번호	드키스케키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시축	(m²)	(m²)	주소		성명
1	심원면 궁산리	210-3	제방	122	12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2	심원면 궁산리	210-4	도로	549	549	-	국(건설부)	
3	심원면 궁산리	211-1	도로	321	321	-	국(건설부)	
4	심원면 궁산리	211-5	제방	213	2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5	심원면 궁산리	211-6	도로	179	179	-	국(건설부)	
6	심원면 궁산리	545-1	구거	236	23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	심원면 궁산리	704	도로	12,858	380	-	국(건설부)	
	합 계	필지수	: 7		2,000 m²			

고창군 공고 제2023-445호

고창 군관리계획(고창읍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고창 군관리계획(고창읍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고 창 군 수 2023년 3월 일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고창 군관리계획(고창읍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나. 위 치 : 전라북도 고창읍 읍내리 241-1번지 일원

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4	고창읍성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창읍 읍내리 241-1 일원	99,562	-	99,562	전라북도고시 제2007-245호 (2007.10.19.)	

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실음생략"

2.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공휴일 포함)

나. 공람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관광산업과

3. 주민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의견서에 의한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관광산업과

4. 관련도서 : 실음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 관광산업과(063-560-29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공고 제2023 -452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서월 공공하수 처리시설 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03월 3일 고 창 군 수

- 1. 사용개시 년월일
- 2023년 03월 03일
- 2. 배수구역
- 전북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일원
- 3.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위치
- 서월 공공하수처리시설 : 전북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802번지
- 4.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및 분류식 분류
- 관계 도면참조
- 5.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구분		BOD	COD	SS	T-N	T-P
서월	유입수질	170	120	170	35	4.5
	설계수질	3.5	7	3.5	8	0.6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 시설용량 : 80㎡/일

○ 처리공법 : ECO-SBR공법

○ 방류수역 : 갈곡천 → 서해(곰소만)

6. 하수배제방식

○ 하수배제계획 : 분류식

○ 하수관거 정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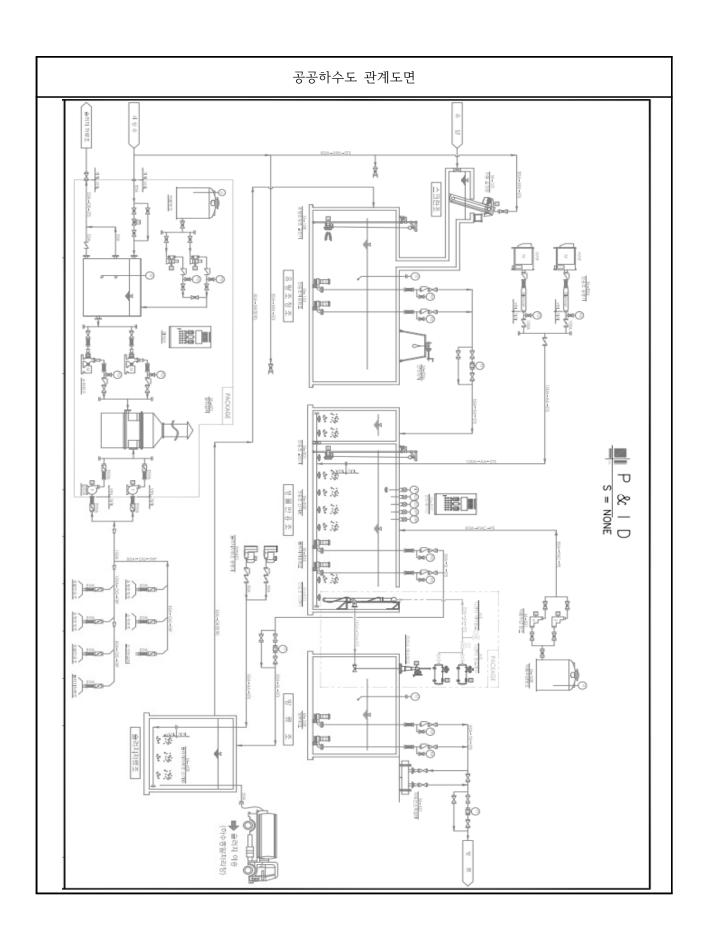
시설물명		형식 및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압송관로	내충격PVC관,∅75mm	m	1,404	
	급공전도	내충격PVC관,∅50mm	m	540	
오수관	오수관로	PE이중벽관,Ø200mm	m	7,278	
		PE이중벽관,Ø150mm	m	1,092	
	계		m	10,314	
배수설비			가구	240	240개소
오수맨홀		Ø 900mm외	EA	223	
맨홀펌프장		개소	개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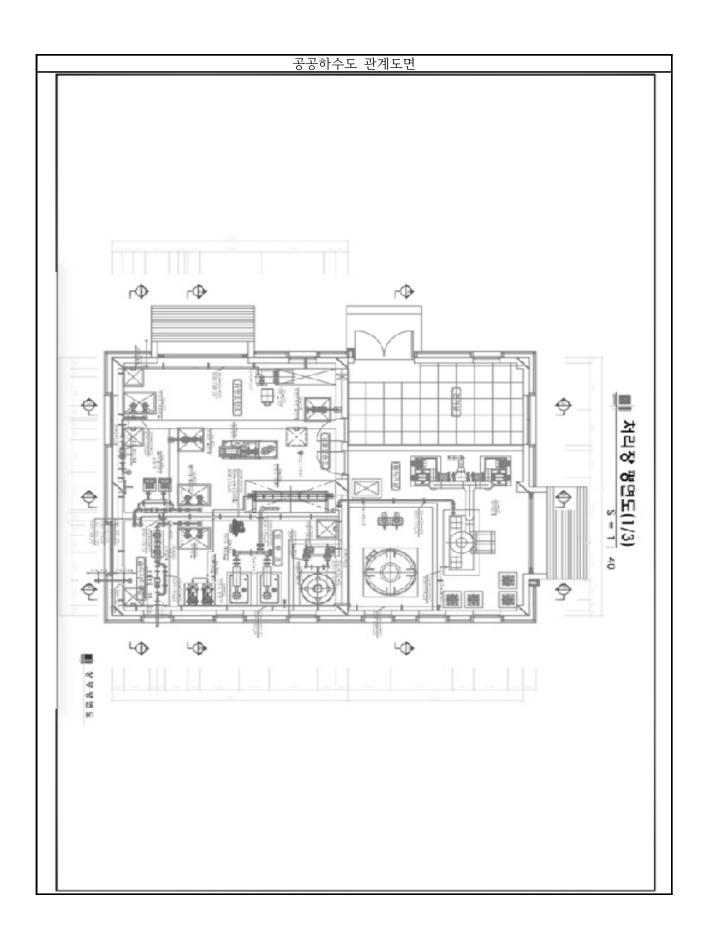
7.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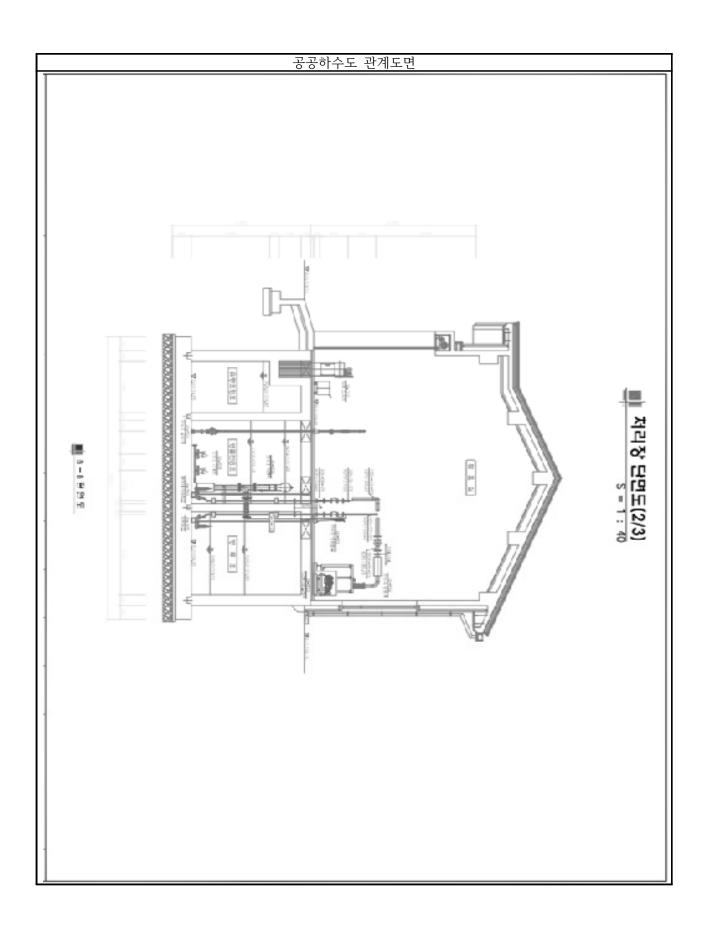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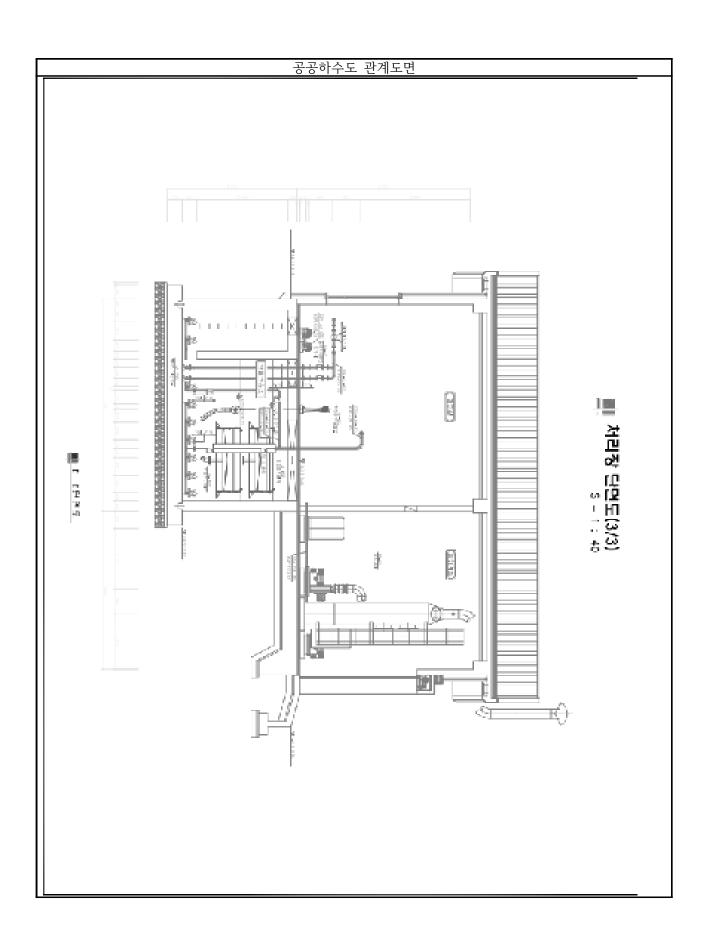
8. 기타사항

○ 관계도면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560-8993)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공고 제2023 - 479호

2023년 고창군 기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시업 시행 공고

고창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고창군수

□ 사업개요

- O 사 업 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O 예 산 액: 10,000천원
 - 일반가정 10만원 지원 /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보일러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시간당 증발 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3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 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 신청기간

2023. 03. 07.(화) ~ 예산소진시 09:00 ~ 18:00

※ 단, 설 연휴,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대리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환경위생과(방문접수)

□ 지원대상 및 금액

- 일반가정 (10만원 지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서식3]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O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O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 1.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2.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 3. 노후 중앙난방 주거용 보일러를 세대별 가정용 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공급자*)
 -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
 - **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한 설치(교체), 지자체 보조시업 공고 전 설치(교체), 온라인 구매 설치(교체) 등

○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 요청서(온라인[제1호서식], 오프라인[제2호서식])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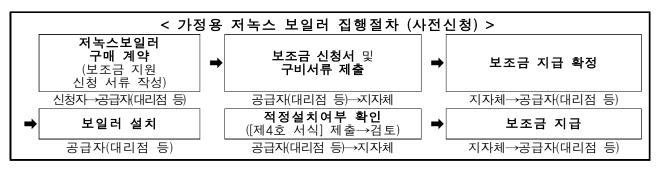
-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한다.
 - ※ 다만, 제③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생략이 가능하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하여야 한다.
 - ※ 다만, 보조금 신청을 금지받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가정용 보일 러는 구매자가 직접 사후신청은 가능함.

□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온라인 신청[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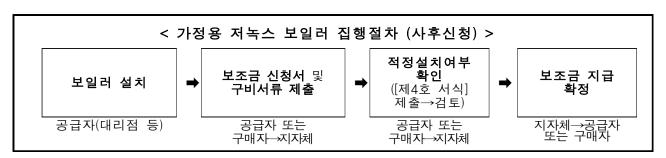
또는 보조급 지급 요청서[제2호서식]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함)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 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한다.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접수 : 환경위생과 **방문제출**

(팩스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문 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2875)

붙임 1.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제1호서식(온라인신청서)]

-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서식[제2호 서식]
- 2.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제3호 서식]
- 3.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세제4호 서식]
-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제5호 서식]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세[제6호 서식]
- 6. 공동주택 설치 동의서 [제7호서식]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용]

(앞쪽)

		가정	용 저녹	i스 보	일러 !	보조금 신	청 관련	년 동의서	
	성 명					연락처			
신청인		(주소) ()						
	주 소		설치주소*) 와 설치주소		.우				
보조금 희망 계: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지급요	.청액		10	0만원 ('	일반) []	60만원 (저	선두층) []
주택소 동의 (세입자의	여부	주택소 제에 대	한 책임은	보조금	신청인어	게 있음을 회	학인하고 0	에 동의합니다	•
(ALBA)	-1 0 17		동의함			<u> 의하지 않음</u>			
개인? 수집·이용		성명, 생년월 ※ 본 2	정보의 항 연락처, 주 월일, 통장정 개인정보 수	소, 성보 지: 전:이용어	기정용 : 원사업 보 대한 동	집·이용 목적 저녹스 보일러 ¹ 조금 집행관리 의를 거부할	교체 비에 활용 수 있으나.	제공받는 자 환경부, 관할 행정기관 이 경우 가정용	보유기간사업종료후 5년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지급 대성	s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을 수 있음을	을 알려드립니다	.
				동.	의함 [] 동의	하지 않음	} []	
보조금 따른 준 및 이행	수사항	취소되다	며, 지원받	은 보조	금의 반	환 및 관계	법령에 의	한 형사 처벌	보조 결정은 의 대상이 될 확인하였습니다.
				동	<u>의함 [</u>] 동의	하지 않음	} []	
행정? 공동이용		보의 공	동이용을 통	통하여 뒤	쪽의 제2	담당 직원이 호 '담당직원 직접 관련 서	확인사항'을	을 확인하는 것	에 따른 행정정 에 동의합니다.
				동	의함 [] 동의	하지 않음	} []	
위임/ (해당			스 보일러 사항 일체					러 설치확인정 세 위임합니다	보 등록 등에
관리 아 동의 사	∥ 관한 서를 제	법률」0 출하고,	에 따라 5 위임사항	선조금 저	지급 대성 하는 경	당 시설에 다 우 위임내용	해서 위외		러 설치 관련
	:금 신 [:] 인(공급		성명 : 성명 :		생년월 생년월			(서명 또는 (서명 또는	
11 -	1 L'(0 E	∃^ /	00.	크나 송년			141	(기이 그는	Ľ/
				반일	[맹싱	기관장 구	이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기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내 보조금 및	한국환경산업	사업종료
생년월일, 통장정보	보일러 설치 정보(DB) 관리 및 통계에 활용	기술원	후 5년

202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뒤쪽)

알 림 사 항

1.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 (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 예시) `22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3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세입자가 소유주와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사전 합 의 없이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2. 【담당직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사무

공동이용 행정정보
일반 건축물대장
집합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시)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시)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2호 서식, 방문신청용]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약	결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دا الله الله الله الله الله الله الله ال	성 명	연락처
신 청 인	주 소	
설치주택 개요	소유자	연락처
[27]TY 7]D	주 소	
보일러 고	고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지급요	청금액	□ 10 만원 : 일반 / □ 60만원 : 저소득층
보조금 선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 □ 사후 신청
0) 7	은행명	
입 금 희망은행	예금주	
, 5 2 5	계좌번호	
모조금	지급대상 시	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3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	러 보조금 지급	·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	'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	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약서나 견적	서)	선신청의 경우 계 ②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1 ,	일러 설치 확인 끝난 경우에 한함)	서 1부. ④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⑥ 전·월세 계 ※ 임차인이 ⑧ 보조금 신	약서 1부(해당 교체하는 경우 청인의 개인정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사항 있는 경우만) ⑦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임대인과의 상호합의 하에 신청필요(별도 동의서 제출 없음) 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제5호 서식) 1부.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제6호 서식)시 생략 가능

[제3호 서식, 방문신청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 설치대수 :

2. 설치일자 : 2023년 월 일

3. 설치장소(주소)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제7호서식 목록제출"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 필수 사진 2장, 선택 사진(노후 보일러 우선지원 신청시) 1장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 시공자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 (선택사항)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 노후보일러 우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

-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중(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중빙서류 (신축 공동 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급자: (서명 또는 인)

[제4호 서식, 방문신청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 예시) `22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3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세입자가 소유주와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사전 합의 없이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위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제5호 서식, 방문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 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1)	개인정보	수진:()]용	항목	:	개인식볔	정보(성명,	여락처	주수	등)
(1 /	/II L: O L	$\Box \Box \lor \Box \circlearrowleft$	\circ	•	/	$O \rightarrow VO O$			col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등의함 🗌	동의하지 않음 [\neg
	<u> </u>	-
) - - 	- 이에에게 ほㅁ L	4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0-10- U	0-19/1	ᇉ	ш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제6호 서식, 방문신청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일반 건축물대장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집합 건축물대장	
모일다 시련시합 보조금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이용기관의 명칭 : 보조금 집행기관 기재 (00광역시 00구)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 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제7호 서식, 방문·온라인 신청용]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일괄신청 대리인 : 00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00건설)

사업명	설치한 곳	신청인	동의여부(서명)
사업명 	실시안 굿	신성인	계좌번호
예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서울시 00동 00아파트 101동 101호	홍길동	서명날인
설치 지원사업	101동 101호	0	000000-00-000000

고창군 공고 제2023-504호

물품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운곡람사르습지 생태탐방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안내판, 수목표찰)

나. 기초금액 : 금48,880,000원(금사천팔십팔만원)(부가세 포함)

다. 품목 및 수량 : 시방서 참조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60일

바. 납품장소 : 시방서 참조

※ 견적제출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시방서,규격서)의 세부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이차/거저\드로/트차\기기	개 출	<u>.</u>
입찰(견적)등록(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3. 3. 8. 15:00 ~ 2023. 3. 13. 15:00	2023. 3. 13. 16:00 이후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총액입찰 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u>G2B분류번호 10자리</u> <u>5512171801[안내판]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업종코드2604)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고창군에 있는 업체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해야 함.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u>물품분류번호 5512171801[안내판]</u>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서 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등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 자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최근 호)에 의거 입찰 대상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 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u>나라장터시스</u> 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개찰 1순위 업체 는 개찰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 없음)

8.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063-560-2502)
- 과업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고창군 관광산업과(☎063-560-2874)
-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물품),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년 3월 일

고 창 군 재 무 관

물품구매 내역서

〇 사 업 명 : 운곡람사르습지 생대관광지 안내판 제작 설치

£ا ت∓	西0	אר ב'	رن عو	∜⊦	면가	un sl	금
-	안내판 A형	H1,800×W2,800mm		2	12, 150, 000	24,300,000	
2	안내판 8월	H1,100×W1,500mm	ī	2	3,100,000	6,200,000	 本 本 本 本 日
က	おいる。	H900 × W1, 200mm	5	-	1,900,000	1,900,000	
4	수 대 변	H180 × W230mm		103	160,000	16,480,000	
	严			108		48,880,000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안내판 설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안내판 제작 설치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방법

안내판 제작.설치시는 본 일반시방서 따라 성실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설계도, 시방서 순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3. 명기 외 사항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4. 보고

계약자는 안내판 설치 전 현장 여건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검사

계약자는 안내판 제작.설치 부분 중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자재사용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 "건교부 지정 검사 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상기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부실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재작업 하여야 한다.

7. 자재관리

자재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8. 제 반수속

본 작업에 따른 전 수속은 계약자가 책임지며, 특히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업무가 필요할 시에는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9. 안전사고

작업 시공전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피해보상

작업중 발생되는 제반피해 (인적·물적)에 대하여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신속 보상하여야 하며, 안내판 제작 및 설치 후 보증기간(1년) 내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1. 원상복구

작업중 훼손된 시설물 (공공·사적)에 대하여는 작업 완료전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현장 발생재 처리

계약자는 안내판 제작.설치 잔여자재 및 해체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 설계변경 및 정산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디자인,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이 증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사진 제출

계약자는 안내판 제작.설치 등 공정별로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특히 은폐 부분의 작업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의 사진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준공계) 접수시 첨부하여야 한다.

15. 제작 및 운반

제작은 모든 공정을 작업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작업은 부득이한 공정에 한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제작된 간판의 운반은 도장부분 훼손등 안내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종이등으로 내부포장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수송과정에서 훼손 발생시는 훼손부분을 보완 또는 재작업 하여야 한다.

16. 안전조치

안내판 설치 시에는 작업자 및 보행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 스테인레스 앙카볼트 12mm이상을 사용하는 등 모든 자재를 부식이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자체하중 및 풍압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 시방서

1. 안내판 기본구성

- 1-1.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사용하다.
- 1-2.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획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될 안내판에 일러스트로 디자인한다.
- 1-3. 안내판의 문자는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사용하고, 그림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1-4. 안내판은 양각과 음각의 글자와 그림으로 표현한다.
- 1-5. 안내판의 지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초에 보강철물 및 앙카볼트를 사용한다.

2. 안내판 제작과정

- 2-1. 원목을 디자인된 크기에 맞도록 절단한 후 전동사포로 표면을 가공한다.
- 2-2. 가공된 원목표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디자인한 필름지를 접착시킨다.
- 2-3.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마치 조각한 듯이 파내는 sandblasting기법을 이용한다.(※ sandblasting: 나무표면에 고압에 견딜 수 있는 필름지를 부착한 후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조각한 듯이 파내는 방법으로, 특히 나무에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경질의 나이테는 깎여 지지 않게 되어 나무의 결이 자연스럽게 살아나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그림과 글자 모두 조각이 가능하다.)
- **2-4.** sandblasting한 나무의 음각부분에 나무의 보호 및 표현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색깔의 오일스텐을 2회이상 칠한다.
 - 2-5. 음각부분에 칠한 오일스텐이 완전히 마른 후 남아있는 필름지를 떼어내고 양각부분의 글자 및 그림부분에 디자인된 컬러로 색칠을 한다.
- 2-6. 양각부분의 컬러가 완전히 마른 후 나머지 양각부분에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오일스텐을 칠하여 안내판을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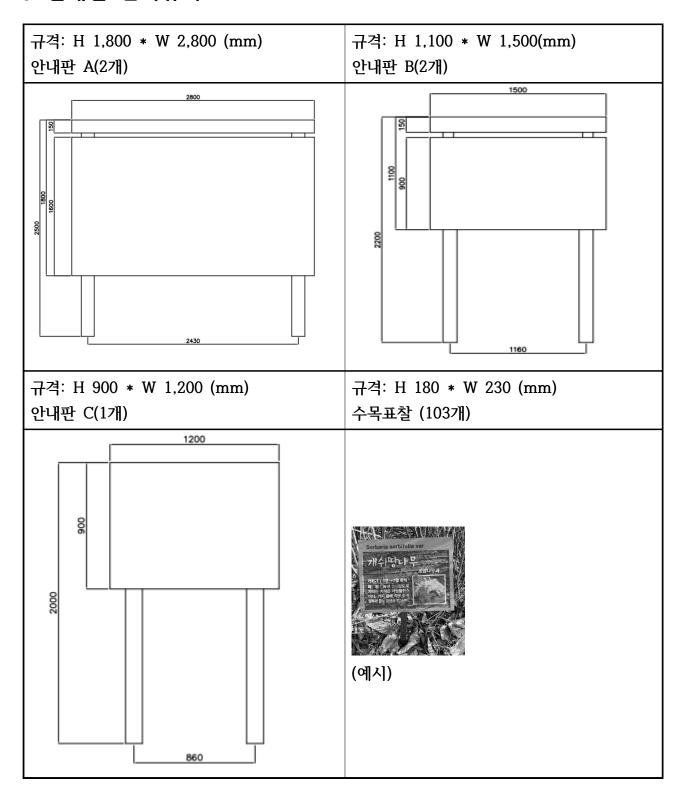
3. 안내판 조립과정

- 3-1. 완성된 안내판을 지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판에 사각기둥을 조립한다.(안내판의 휨방지를 위하여 사각기둥에 홈을파서 안내판을 끼워 조립하도록 한다.)
 - 3-2. 사각기둥에도 디자인된 색깔의 오일스텐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 3-3. 사각기둥의 하단부분에 보강철물을 조립할 수 있도록 볼트구멍을 타공한다.
 - 3-4. 완성된 안내판의 변형이나, 흠집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해 포장하여 운반해야 한다.

4. 안내판 설치과정

- 4-1. 조립한 안내판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사각기둥과 보강철물을 조립한다.
- 4-2. 안내판 기둥과 보강철물이 묻힐 수 있는 크기로 땅을 판 후 안내판을 세운다.
- **4-3.** 안내판을 세운 후 안내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강철물 주위에 기초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땅을 메워 안내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안내판 설치규격



6. 안내판 제작

- 6-1. 최종 디자인 데이터의 이상유무를 확인 보고, 감독관의 최종확인을 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 6-2.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원부자재는 KS 기준에 맞는 재질로 엄선하여 입고한다.
- 구입한 원부자재를 시트커팅기와 금속절단기, 캇타기 등을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하거나 절단한다.
-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목재 등에 부속물을 조립, 용접하여 부착하고 시트류를 부착한다.
- 목재와 금속부는 도장이나 방부처리로 마감한다.
- 모든 제작공정을 마친 완제품을 포장한다.
- 6-3. 공장에서 안내판을 기둥에 조립한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형태로 보행자 등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시인성의 확보를 해야한다.

7. 관리지침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하다.

<기본>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 시행령
- 2) 도로명 주소법
- 3)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한국관광공사]

8. 구조물 시공 및 마감

- 8-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8-2. 재료절단은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 되어야 한다.
- 8-3. 다듬질은 양호하고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 8-4. 도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얼룩 및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 8-5.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 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 하여야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 8-6. 출력방식에 의한 표기 및 부착이나 반사지 부착시 표면의 기포가 생겨서는 안되며, 완성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낱개로 포장하여야 한다.

- 8-7.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그라인딩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 8-8.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 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8-9. 현장 설치 시 ANCHORING, SCREWING으로 구조물을 고정하여야 하며 만일 현장이 지면 ANCHORING으로 고정할 수 없는 노면일 때 con'c기초를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8-10. 완성된 방향안내판을 지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각기둥에 안내판 날개를 조립한다.
 - 8-11. 사각기둥 및 원기둥의 하단부는 콘크리트 기초에 매립되어야 한다.

8-13. 규격

- 종합안내판

연번	품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소요자재				
			부위	재질	규격(mm) (H × W × t)	단위	수량
1	안내판 (A)	1800×2800 mm, 40T 안내판	안내판	적삼목	1800×2800×40	- EA	2
			주기둥	적삼목	150×150×H2500		
2	안내판 (B)	1100×1500 mm, 40T 안내판	안내판	적삼목	1100×1500×40	- EA	2
			주기둥	적삼목	150×150×H2500		
3	안내판 (C)	900×1200 mm, 40T 안내판	안내판	적삼목	900×1200×40	EA	1
			주기둥	적삼목	150×150×H2500		
4	수목표찰	H180×W230	안내판	적삼목	180×230	EA	103

9. 기타사항

- 9-1. 안내판, 수목표찰 제작설치는 시방서 및 제작설치 도면에 의하되 반드시 현장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 9-2. 시방서 및 제작설치 도면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작업상 필요한 보완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 9-3. 보행자 등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시인성 확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설치하여야 한다.
- 9-4. 안내판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기초와 조립한다.
- 9-5. 콘크리트 기초가 묻힐 수 있는 크기로 땅을 판 후 안내판을 세운다.
- 9-6. 안내판을 세운 후 안내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기초에 돌과 흙 등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땅을 메워 안내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도 있으며 콘크리트 기초전체는 땅속에 묻도록 한다.)

10. 검사방법

안내판, 수목표찰이 크기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내용은 디자인 시안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검사한다.

10-1.안내판, 수목표찰 크기의 검사

:안내판, 수목표찰이 크기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검사한다.

10-2. 디자인 검사

:안내판, 수목표찰이 디자인된 시안대로 모양 및 색상이 제작되었는지 검사한다.

10-3.설치 검사

:안내판, 수목표찰이 규격에 따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한다.

10-4.검사성적서 제출

:안내판, 수목표찰의 납품, 시공 검사가 끝난 후 납품완료서 또는 준공완료서를 검사성 적서 대신하여 제출한다.

11. 포장 및 표시

11-1.포장은 박스 및 두꺼운 비닐 소재로 낱개 포장하여 제품의 파손을 방지한다.

11-2.표시는 안내판 등 외면에 제작일자, 제작사명, 연락처를 기재한다.

(매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의 공용물품표지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작일자
- 제조자 및 연락처
- 11-3.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한다.

12. 납품 및 설치

설치자는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기록하여 검수 시 제출한다.

납품자는 관리자에게 제품의 취급 및 관리를 충분히 숙지시킨 후 점검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부합되도록 설치한다.

13.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수량 및 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설치구간

구 분	품 명	위치	수량	비고	
	안내판 A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 52-7	2 EA	구간중	
	안내판 B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212	1 EA	고창군 지역	
문곡습지 생대탄반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79	1 EA	안내판 설치	
생태탐방 길	안내판 C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292-2	1 EA	(설치시 구간, 위 치	
	수목표찰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25 (생태공원 일원)	103 EA	감독공무원 협의)	

